

의안 번호	1484	<b>【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】</b> <b>심사보고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11. 8.(목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11. 9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11. 30.(금)

## 2. 제안설명 요지 (기획예산실장 한영필)

### 가. 제안이유

예산의 불법 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정의,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및 제3조)
-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예산낭비신고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예산절감사례 공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8조의2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4조의2

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최영환)

본 제정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의 불법 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신고체계를 구체화하고,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

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